성주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성주군수
2. 제정이유
 ○ 성주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 공간 및 건축물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나.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안 제6조) 및 사업지원(안 제7조)
 다.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의견없음.(2016. 9. 21. ~ 10. 12)
 라.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성주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 및 건축물에 범죄예방 환경 설계[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안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과 추진사업(안 제6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8조)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등입니다.
 ○ 건축물 설계시부터 범죄예방을 위해 다양한 안전 시설물(CCTV 설치, 조명설치, 벽화, 투명유리, 비상벨, 담장정비 및 허물기 등)을 고안하고 건축물을 완성시켜 범죄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사회적 약자인 노약자, 장애인, 부녀자, 어린이 등의 안전에 꼭 필요로 하는 범죄예방 기법입니다.
 ○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함으로 본 조례를 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성주군수
2. 개정이유
 ○ 「건축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 및 규제개혁에 따른 관련조항을 일부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적용의 완화 기준 신설(안 제3조 제6항),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신설(안 제25조의 3), 실내건축 적정 시공여부 검사 신설(안 제25조의 4), 건축협정 관련 규정 신설(안 제34조의 2), 이행강제금의 부과 특례 및 탄력적 운영 신설(안 제36조의2) 등
 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기준 정비(안 제8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다. 재해복구 및 대수선 건축물 건축허가 수수료 제외(안 별표1)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의견없음.(2016. 8. 25. ~ 9. 20)
 라.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 및 규제개혁에 따른 관련조항을 일부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 안 제3조 적용의 완화 기준 신설, 제25조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신설, 제34조 건축협정 관련 규정 신설, 제36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특례 및 탄력적 운영과 감경 신설, 안 제8조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기준 정비, 안 별표1 재해복구 및 대수선 건축물 건축허가 수수료 제외 등 기존 조례의 운영상 문제점과 제도 개선사항이 현실적으로 반영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함으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회의 서명의원